

발행번호 : A45X524GT00287

지 금 보 증 서

(특정채무보증용)

수입
인지

2025 년 11 월 12일

Fashion Choice Pte. Ltd.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앱에서 선지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등(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을 구매하는

보증처 :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

보증인 (주) 한국 씨티은행중앙기업업무센터(원)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

보증금액		일십삼억칠천일백만원 정
보증기일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피보증 채무의 내용	채무자	명칭 : FASHION CHOICE PTE. LTD. 주소 : 12 MARINA BOULEVARD, HEX15-01, MARINA BAY FINANCIAL CENTRE, SINGAPORE (018982)
	채무종류	정약결제기간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에게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전에 이행청구 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3. 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2. 파산 ·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1.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거래금지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거래금지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내국법인 및 개인에 한합니다.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이행장		2.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에 그 이행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
청구금액		3.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처는 아래의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① 보증신청인(Fashion Choice Pte. Ltd.)의 명의로 서면 지급보증서 원본과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지급보증서의 사본 ② 보증신청인(Fashion Choice Pte. Ltd.)의 명의로 작성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 ③ 보증신청인(Fashion Choice Pte. Ltd.)의 명의로 작성된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위 청구금		4.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5835) 회수조건, 본 보증서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5835)는 효력이 소멸되며 구보증서에 대한 잔존채무는 본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합니다.

청구금액

위 청구금

채권자

명 칭
주 소

(인)

년 월 일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이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은행과 보증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지급보증의 상대방(이하"보증처"라고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 및 보증처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 신청인 및 보증처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이란 신청인과 지급보증 약정을 하고 서면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 "지급보증"이란 신청인이 보증처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형태의 여신을 말합니다.
 3. "서면 지급보증서"라 함은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4. "전자 지급보증서"라 함은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규정,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지급보증서
은행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며, 대내지급보증의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서면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 지급보증서
가. 은행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보관하며 신청인 및 보증처에게 별도의 원본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전자 지급보증서는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4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처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지급보증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출력할 수 있으며, 추가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최대 2회(총 5회)를 추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 지급보증서 출력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라. 전자 지급보증서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기업용(개인사업자 포함) 지급보증으로 보증처가 국내에 소재하는 대내 지급보증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 (공인인증서의 사용 및 관리) ①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신청인과 보증처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기업용(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처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 당시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처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한 후 전자 지급보증서의 갱신(연장) 및 해지, 보증 채무이행 청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5조 (보증금액)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은행은 보증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채무 보증의 경우 부할상환조건에 따라 상환된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6조 (보증채무 이행청구) 보증처는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처는 보증기일 만료일 전이라도 신청인의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또는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처가 서면 지급보증서 원본, 이행청구 관련 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직접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보증처가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 채무 이행청구 관련 증빙서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직접 은행에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4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완료된 시점은 보증처가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을 때로 합니다.
3. 보증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존재하는 피보증채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금액, 청구시기, 기타 제반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하여 보증처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보증처는 이를 이행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위조·변조된 경우
- 나.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지급보증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이 은행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다를 경우

제7조 (보증채무의 소멸) 은행의 보증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
2. 피보증채무가 소멸된 때

제8조 (지급보증의 해지) ① 신청인이 보증기한 만료 전 지급보증 해지를 원할 경우에 은행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지급보증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인은 보증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 보증을 해지하는 날까지 은행과 약정한 보증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서면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보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처가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제4조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지급보증 해지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시간) ① 신청인 및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게시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또는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양도 또는 질권설정)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증처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으로써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전자 지급보증서의 출력본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분실·도난 또는 멸실) 신청인 또는 보증처는 서면 지급보증서의 원본을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 전자 지급보증서에 관한 사항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면책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상 손실부담 및 면책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적용 및 교부)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ICC Publication 590에서 개정하여 1998년에 제정한 보증신용장 통일규칙(SP: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을 따르며 동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④ 은행은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의 신청인과 보증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약관을 교부 합니다.

1.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 신청인 : 은행이 지급보증거래 약정 시 지급보증거래 약관 사본을 직접 교부
2. 서면 지급보증서 보증처 : 신청인이 약관과 함께 인쇄되어 있는 지급보증서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보증처에 직접 전달
3. 전자 지급보증서 보증처 : 전자 지급보증서의 보증처가 직접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 약관에 확인 및 동의한 후 지급보증서를 조회(또는 출력)하는 경우 약관이 함께 조회(또는 출력)됨

제14조 (기타) 서면 및 전자 지급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은 오로지 (주)한국씨티은행에 의해 대한민국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해집니다. 이 보증서에서 관련 당사자

[Letterhead of the Applicant]

(주)한국씨티은행 귀중

Date: YYYY.MM.DD.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9 층

Attention : 한국씨티은행 지급보증담당자

BG reference : A45X524GT00287

환불 거절 확인서

당사는 소비자 [*name of the consumer*] 가 YYYY 년 MM 월 DD 일에 주문번호 [NNNNN]으로 [HTTPS://KR.SHEIN.COM](https://kr.shein.com) 에서 구매 청약하고, YYYY 년 MM 월 DD 일에 환불 신청을 하였으나, 본 확인서 발행일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귀행이 해당 소비자에게 환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The Applicant (duly authorized signature (or) corporate seal)]



대한민국정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유 번 호 : 2502709-136263259

(Certificate No.)

수 입 인 지 금 액 : 10,000원

(Stamp Duty Amount)

성 명 (상 호) : 한국씨티은행

(N a m e)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028114717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한국씨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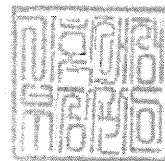
(Stamping Channel)

발 급 일 자 : 202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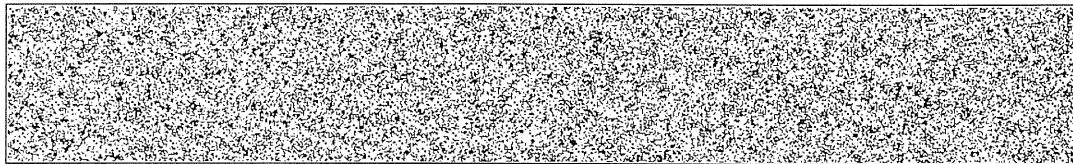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프린터 시험인쇄 요망),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添附)하여 사용합니다.

<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

*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e-revenuestamp.kr에서 수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 방법 >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액면금액의 97%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